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2049 관 련
----------	-------------

제안연월일 : 2024년 12월 18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통합 적용시점에 대해 수정함.

## 2. 수정의 주요 내용

-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을 시행일로 하였으나, 개정안의 심사가 연기됨에 따라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함(안 부칙 제1조).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24년 11월 9일부터</u>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u> 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조 (개정안과 같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장애’라 함은”을 “‘장애’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장애인’이라 함은”을 “‘장애인’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애인 차별 금지’라 함은”을 “‘장애인 차별금지’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장애인 인권증진’이라 함은”을 “‘장애인 인권증진’이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관장”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항 전단 중 “기관”과 같은 조 제2항 중 “기관”을 각각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한다.

제10조의4 전단 중 “기관”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를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장애’</u> 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p>2. <u>‘장애인’</u>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p> <p>3. <u>‘장애인 차별금지’</u> 라 함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p>	<p>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p> <p>1. <u>“장애”</u>란 -----            -----            -----            -----            ---.</p> <p>2. <u>“장애인”</u> 이란 -----            -----            -----            -----            -----            -----            -----.</p> <p>3. <u>“장애인 차별금지”</u>란 -----            -----            -----            -----</p>



현행	개정안
<p>에 필요한 인력을 둔다.</p> <p>③ <u>기관장</u>은 상근으로 한다.</p> <p>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u>기관</u>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u>기관</u>은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4. (생략)</p> <p>② <u>기관</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정책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u>기관</u>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 6. (생략)</p>	<p>-----.</p> <p>③ <u>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u>-----.</p> <p>④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 ①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1.·2. (현행과 같음)</p> <p>③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p> <p>1. ~ 6.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시장은 <u>기관</u>의 운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u>기관</u>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p>	<p>제10조의3(운영 위탁) ① ----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 ----- ----- -----.</p> <p>②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p>
<p>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u>기관</u>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신청인, 시민단체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에 참여하는 <u>자</u>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의4(관계전문가 등의 조사 참여) <u>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 -----.</p> <p>----- <u>사람</u>----- -----.</p>
<p>제12조(<u>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u>) ① <u>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u>를 둘 수 있</p>	<p>제12조(<u>심의</u>) <u>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장애인복지위</u></p>

현행	개정안
<p>다.</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p> <p>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당연직 위원은 복지실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li> <li>2. 장애인복지 분야의 대학교수</li> <li>3. 장애인복지기관을 대표하는 자</li> </ol>	<p>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li> <li>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3. 장애인 인권증진의 정책에 관한 사항</li> <li>4. 그 밖에 장애인 인권증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현행	개정안
<p>4. 장애인인권단체 대표</p> <p>5. 법조인</p> <p>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p> <p>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⑦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p> <p>⑧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p> <p>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p> <p>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p>	

현행	개정안
<p><u>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⑪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p> <p>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생략)</p> <p>② 보상금의 지급 여부는 장애인인권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보상금의 지급절차, 금액,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13조(보상금 지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장애인복지위원회----- ----- -----.</p> <p>③ (현행과 같음)</p>